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노력과 금서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Libraries' Efforts to Preserve Intellectual Freedom and Banned Books

이 명 희(Myeong-Hee Lee)**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 봉사가 추구하는 지적자유에 대한 법률적 기반과 금서 또는 유해도서로 판정된 자료를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금서조치를 주도하는 종교적 집단과 정치적 우익집단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금서조치로부터 지적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각종 단체의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한편, 한국과 미국에서 금서로 판정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금서로 인정되는 음란물의 헌법적 판정 여부와 판정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인터넷과 게임 등으로 대변되는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음란물로 인해 금서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성인물과 청소년용의 도서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으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장치를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Intellectual Freedom"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library services. Particularly, this paper pursues to the legal foundation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elebrates "the Banned Books Week" to draw attentions to the danger of banned books and censorship. This study also studies how "the banned books" are made by pursuing the definitions of "pornography" and "obscenity" in terms of the court's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Recently, the top three reasons for the "banned books" are considered to "be sexually explicit", "contain offensive language" and "be unsuitable to age groups".

키워드: 지적자유, 금서, 음란물, 검열, 대법원판례
Intellectual Freedom, Banned Books, Pornography, Censorship

* 본 논문은 2004년도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mehelee@smu.ac.kr)

논문접수일자 2004년 6월 2일 논문심사일자 2004년 6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6월 19일

1. 서론

도서관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적자유 개념은 도서에 대한 검열로부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적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지적자유 개념은 단순한 문헌에 대한 검열현상뿐 아니라 자유로운 사상의 교류와 지식의 전달을 제한하는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제약에 저항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지적자유로 확대되었다. 역사적으로 사서들이 지적자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도서에 대한 각종의 검열사건을 통해서였다. 1924년 카네기 도서관에서의 자료선정 목록 사건이나 1929년 '관세법'의 개정에 의해 외설적인 도서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ALA의 반대 입장 표명, 1934년 시민단체의 캠프 교육자료 거부사건에 대한 ALA의 항의서한 전달 등은 모두 검열에 대한 협회차원의 거부였다. 특히 1930년대 도서관계의 지적자유에 대한 공론화에 기여한 검열사건은, 유명한 존 스타인벡의 소설인 《분노의 포도》에 대한 일부 공공도서관에서의 선정거부와 이에 대한 ALA차원의 대응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도서 검열 사건에 대해 반대하는 지적자유 개념은 도서관계 전체로 확산되었고, 1939년 ALA에서는 당파나 교리상의 이유로 도서관 자료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도서관의 권리선언'(Library's Bill of Rights)을 주장하였다. 이 선언 이후, 1951년 비디오오디오 매체에 대한 선별적 검열을 반대하는 '라벨링성명' 발표와 1961년, 1967년에

걸쳐 개정선언을 채택하였다. 이후 지적자유위원회는 개정방식을 바꾸어 전면적 개정 대신에 지적자유에 관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ALA 차원에서 권리선언에 대한 해설문을 채택해 오고 있다.

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반하는 검열을 소극적인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때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지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금서에 해당된다. 금서는 단지 도서관이나 기타 장소에서 책이나 지적소유물에 접근을 막는 형태 뿐 아니라 금서를 불태우는 분서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도 세계 각국에서는 유해도서 내지는 음란물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로운 사상의 전달이나 배포가 금지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봉사가 추구하고 있는 지적자유 개념의 법률적 근거를 알아보고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이러한 활동에 위배되는 사항을 밝히는데 있다.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된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봉사가 추구하는 지적자유 개념의 법률적 기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간략히 알아보고, 금서 또는 유해도서로 인정되는 자료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금서로 판정된 자료는 주로 어떤 종류의 자료가 중심이 되었는지를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파악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에서 금서조치를 주도하는 집단과 금서조치로부터 지적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중심으로 노력하는 집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한편, 한국과 미국에서 금서로 판정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

봄으로써 금서로 인정되는 음란물의 헌법적 관정이 어떠한지와 판정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이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검열이나 금서로부터 지적자유를 고양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유해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와 실제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가 상충된 사례를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점검해 보았다.

2. 도서관 봉사가 추구하는 지적자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

2.1 검열과 표현의 자유

도서관의 지적자유 토대가 되는 기본 이념은 검열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적 제반권리 즉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비추어 보아,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부합하여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개념으로서 주장될 수 있다. 미국의 헌법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수정헌법 제1조의 내용으로서 일체의 검열적 규제를 부정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적인 법률적 토대가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지적자유를 기반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이념은 1966년 채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9조(표현의 자유)의 제2항에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관

한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에는 ...(중략)...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유를 구하고 받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선언하고 있다. 즉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은 이미 세계적 의미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 선언되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하거나 판례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상황이라는 특수 환경과 유교적 통치전통 등에서 비롯한 권위적 분위기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안위와 보안을 우선하는 사법적 전통을 판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나 80년대 민주화 투쟁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 개념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부분적인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서관의 지적자유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사상과 정보유통의 광장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뒷받침하는 배경 철학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한편, [지적자유 편람]에 의하면, ‘검열’은 출판물의 부분적인 소멸, 절취뿐만 아니라 자료의 금지, 방해, 억압, 박탈, 제거, 라벨링, 이용제한 까지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도서관의 지적자유에서 검열 행위는 이용자의 자료에 대한 접근 권리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설정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내외에서의 검열 행위에 대한 저항은 곧 사상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적 활동으로 간주된다.

2.2 알권리 및 정보공개제도

정보의 생산이 폭증하고 있는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과도하게 형성된 정보전달의 자유 속에서 정보입수 즉 받는 자유의 확보가 보다 중

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를 받을 자유 즉 '알 자유'의 개념은, 공권력에 집중된 독점정보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요구하는 '알권리' 개념으로 대두하였고, 국정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한 '정보공개제도'와 언론매체활동과 관련한 '정보접근권', 그리고 시민교육과 관련한 '독서의 자유' 등으로 확대되었다.

정보접근 및 이용에 대한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알권리는 국내의 경우 지난 1996년 '공공기관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행정, 사법, 입법부 등의 정부기관에서 구체적인 시행령과 세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개인 사생활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한 공개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정보개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에 대한 불복구제수단으로서의 '정보공개위원회' 대신에 행정심판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누구나 공개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 의해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해서 도서관의 역할은 이들 행정자료를 포함한 일체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정보접근의 경로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도서관은 이용자 모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도서관 정보자료 수집과 제공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만일 도서관이 자기규제에 의해 자료수집과 제공의 역할을 소홀히 한 때에는 시민의 알권리

와 도서관 이용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ALA의 자유선언문에서 도서관의 개념을 '정보와 사상의 광장'으로서 표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정보공개제도의 전달경로로서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선의 목적으로 설정한다.

한편, 선진국의 지적자유 선언을 보면 자료수집과 제공의 자유 그리고 이용자의 비밀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각각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권'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를 '알권리'라고 한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알려지지 않을 권리'로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리는 알권리에 대항하는 권리로서 간주하지만,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권이 정보공개와 전산시스템에서 자기정보를 요구할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프라이버시권 또한 알권리의 개념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게 된다. 결국 도서관 권리선언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언의 내용은 한마디로 알권리를 표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3 정보접근권

오늘날의 정보접근권은,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민 누구나 국정과 관련하여 수집된 막대한 국정정보에 대한 이용권리를 가지며, 국민이 원하면 국정정보에 대한 공개나 접근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기본권적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알권리이며, 알권리를 정보를 받을 권리와 정보를 요구할 권리로 설정한다면, 접근권은 바로 정보를 요구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특징적 현상의 하나는 정부기관의 정보독점이 심화되고, 정보를 전달받는 쪽의 수동적 입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상호교류상 건전한 균형을 위해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쪽의 사회적 공공성, 공익성이 강조된다면, 전달받는 쪽은 보다 적극적인 알권리로서 정보 접근권이 요구된다. 국가기밀을 이유로 과도하게 제약하는 국정정보에 대한 통제는 결국 국민의 참정권을 해치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미국의 ‘정보자유법’이나 국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민의 정보접근권 즉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접근권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도서관의 역할은 전장에서 지적한 대로 정부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의 경로로서 기능하는 것이며, 도서관이 입수할 수 있는 모든 행정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도서관의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접근권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한 중요한 문건으로, 1986년 ‘정보접근의 자유와 형평성에 관한 위원회’의 결과보고서인 일명 ‘라시보고서’(Lacy Report)가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민의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도 평등한 접근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검토하면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권고를 하고 있다. 즉 인쇄매체 환경에서와 같이, 전자정보의 보급시스템에서도 공중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경로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설정하고, 따라서 전자정보의 보급시설로서 도서관 시설의 정보화 투자와 사서에 대한 기술교육, 이용자 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국정정보에 대한 공공적 접근경

로로서 기존의 국가 도서관 기반체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라시보고서는, 부서별 토의를 거친 ALA의 특별위원회 검토결과, 부분적인 이견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ALA의 기본정책들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활동들

미국의 도서관협회(ALA)는 산하에 지적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명칭은 “지적자유위원회(The 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 “지적자유사무국(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독서자유재단(The Freedom to Read Foundation)”, “리로이 메리트 인도주의기금(The LeRoy C. Merritt Humanitarian Fund)”, “지적자유원탁회의(The Intellectual Freedom Round Table)”, “지적자유활동조직(The Intellectual Freedom Action Network)” 등으로 다양하며, 그들의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1970년 ALA는 개정 성명에서 “지적자유위원회”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ALA의 개정성명에는,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와 ALA의 도서관권리선언에 의거하여, 도서관이 용자, 도서관, 사서 등의 권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권고하는 것, 또한 지적자유와 검열 문제에 대해서 지적자유사무국과 협회 내 관련 부서들과 밀접히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지적자유위원

회는 지적자유관련 문제에 대한 협회의 정책을 ALA의 평의회에 권고하는 것을 제일의 임무로 하고, 평의회는 지적자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적자유 문제에 관한 협회의 공식 입장을 정책성명이나 해설문, 결의문, 지침 등으로 채택하고 있다.

“지적자유사무국”은 지적자유와 관련한 협회의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담당부서로서 사서들에게 지적자유 개념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지적자유관련 각종의 교육적 출판물과 정보성 간행물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지적자유사무국’은 지적자유와 관련한 제반 활동의 중심기구로서, ‘독서자유재단’이나 ‘리로이 메리트 인도주의 기금’ 등 협력단체의 행정실무에 대한 지원이나 자문을 하는 것은 물론, 월간 [지적자유활동소식]과 격월간 [지적자유소식]과 같은 정기간행물의 발간, {지적자유편람}, {금서주간용 도서목록}, {검열과 선정}, {도서관에서의 비밀} 등과 같은 교육자료를 간행하는 출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들 조직활동의 소식지로는 당초 지적자유위원회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다가 지적자유사무국에서 1972년부터 간행하고 있는 [지적자유소식](Newsletter on Intellectual Freedom)이 있다. [지적자유소식]은 사서들과 지적자유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열사건, 판례, 입법, 관련 출판물 등 지적자유와 관련한 전반적인 동향을 제공하는 소식지로서, 지적자유에 관한 제 견해를 표명하는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물론 지적자유위원회, 지적자유사무국, 독서자유재단 등의 활동을 주로 소개하는 매체 이용된다.

[지적자유활동소식]은 비공식 간이소식지로,

최근의 검열논쟁이나 지적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관한 최신정보를 소개하고, 지적자유문제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나 사안을 회원 및 후원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서자유재단”은, ALA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이상을 목적으로 삼고 개인의 독서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도서관 및 관련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독서자유재단은 표현의 자유나 독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활동하다가 곤경에 처한 사서들에게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지원단체이다. 독서자유재단은 표현의 자유나 독서의 자유를 증진하는 제반 도서관 활동과 관련하여 사법적 곤경에 처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재판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언론,출판의 자유를 다루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여 기본권 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한다.

‘리로이 메리트 인도주의기금’은, 검열에 대한 반대와 지적자유 증진을 위해 노력한 사서인 리로이 메리트를 기념하여 독서자유재단이 설립한 공익기금이다. 이 기금은 지적자유를 옹호하다가 관련 문제로 실직하거나 직장에 위협을 받는 사서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1969년 호진(T.E. Hodgkin)사건에서 비롯한 ‘사서를 위한 전국자유기금’을 흡수하면서, 사서개인의 신념과 사회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이들의 지원을 어디까지 확대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지적자유원탁회의”는 ALA내에서 도서관의 지적자유와 관련한 제반활동, 수행프로그램,

문제사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들의 지적자유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의사소통의 기구이다. 지적자유원탁회의는 협회 내에서 지적자유에 관심을 둔 회원들의 자생조직으로서, 지적자유와 관련한 각종의 사안에 대한 여론수렴은 물론 협회의 관련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적자유와 관련한 현저한 업적에 대해 포상제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원탁회의를 통해서 지적자유 관련 정책수행에서의 ALA의 책임의식을 독려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적자유활동네트워크”는 풀뿌리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임시집단으로, 그들 지역에서 검열논쟁이 발생할 때는 기꺼이 독서의 자유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자발적 봉사조직으로 각주마다 지적자유 문제에 대한 감시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 지역의 지적자유관련 활동을 정기적으로 사무국에 보고하고, 검열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사무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활동한다. 지적자유활동네트워크는 그들의 업무를 알리기 위한 소식지인 [지적자유활동소식](Intellectual Freedom Action News)을 발간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적자유를 신장하기 위하여 ALA 차원에서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도서관계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가시적인 움직임이 별로 없는 상태이다. 국내 도서관계에서는 아직도 지적자유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에 몇몇 개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한국도서관협회 중심으로 활성화시키는 조직화가 요구되고 있다.

4. 금서

4.1 금서의 개념과 역사

금서란 발행이 금지되거나 발매가 금지된 책을 말한다. 출판물을 규제하는 이유는 국가나 체제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 위엄을 해치고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행해진다. 특정 책의 내용이 기성체제에 도전하는 위협으로 간주될 때 그 책은 탄압의 대상이 되어 금서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김삼웅(1987)에 의하면, 금서는 다음의 여섯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반체제적인 정치관계 책으로 이는 정치적으로 기성체제, 기성제도에 대항하여 이를 비판하거나 고발, 개혁하려는 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둘째는 종교적인 이단책을 의미하며, 셋째는 천체에 관한 책이 금서로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넷째는 음란관계에 관한 책이지만 문학성이 높은 예술적인 책을 음란물로 몰아 금서로 만든 경우가 많다. 다섯째는 이데올로기성 금서로서, 즉 새로운 이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기성체제, 기성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저서들이 이에 해당한다. 여섯째, 고발문학 또는 폭로문학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의 금서는 그 본질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성 금서와 반체제적인 정치관계 책이거나 고발문학 또는 폭로문학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보다는 음란물이 금서의 주류를 이루어가는 추세이다. 또한 1995년도 이후 인터넷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출판매체의 육성이나 국민독서 진흥정책은 선진 각국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중시되어 온 분야이다. 유해도서 규제제도도 다른 면에서 보면 그 나라의 독서진흥정책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즉 유해 도서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들이 양서를 읽는 것을 권장하고 불량·저질 간행물을 출판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양서를 발간하는 출판기업을 보호해 주는 정책이며 책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신뢰를 두텁게 해 줌으로써 독서진흥을 유발시키는 정책이다. 금서정책은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유해도서 규제정책이다.

미국에서의 금서조치는 크게 반체제적인 도서, 종교적인 이단서적, 그리고 음란물의 3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의 사용에 따른 음란물의 유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이명희 2001). 첫째, 반체제적인 정치관계책으로 이는 정치적으로 기성체제 및 기성체제에 대항하여 이를 비판하거나 고발, 개혁하려는 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이데올로기성 금서도 포함되는데, 새로운 이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기성체제, 기성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냉전시대에는 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찬양·고무시키는 저서들이 이에 해당했다. 미국에서는 1030년대의 대공황에 즈음하여 발생한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터하여 이러한 기성체제에 대항하는 사조가 발생하였으며, 이의 대표적인 금서는 스타인벡의 《분노는 포도처럼》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시대와 1950년대 한국전쟁과 메카시 논쟁 등이 불을 붙였던 50년대는 이러한 이념논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이고, 도서관에서의 검

열도 극해 달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종교적인 이른바 이단서적이다. 특히 미국의 남부지방에서 강했던 기독교의 교파 중 근본주의를 표방했던 남침례교를 중심으로 종교적 탄압이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디즈니사의 유명한 어린이 도서인 《신데렐라》나 《피노키오》 등이 마술을 조장하는 사악한 도서라는 이름 하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많이 불태워졌다. 최근에는 《해리 포터 시리즈》가 마술을 조장한다는 의미에서 금서로 지정되고 있다. 셋째, 음란관계 도서이다. 그러나 문학적 가치가 높은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책도 음란도서로 몰아서 금서로 만든 경우가 많은데 이의 대표적인 것이 D. H. 로렌스의 《아들의 연인》 등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러한 금서조치와 더불어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 사서들의 자기검열 대상이 주로 종교적 도서였다면,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이데올로기적 금서를,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자기검열의 대상은 반사회적 가치로 표현되는 유해음란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조성된 탈 이념적 분위기에 따라 이념자료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희석되면서 상대적으로 사회문화 주제에 대한 관심으로 검열 대상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및 사회 안전의 정치적 논의에 대한 검열은 어느 정도 체제적 안정성이 확인되고 나면 사회윤리에 대한 검열로 그 비중이 넘어간다는 통상적인 검열현상에 대한 경험적 이론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냉전시대의 검열의 극단적인 예는 메카시즘의 발현에서 볼 수 있다. 1950년 2월, 미국 위스컨신주의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은 미국 국무

부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첩자로서 미국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있다는 폭탄 선언을 하였다. 냉전시대로 대표되는 미·소 양국의 이념 대립이 극에 달한 당시의 상황에서 극우에 반하는 많은 지식인과 노동자의 권리나, 인종 차별에 대한 인권의 주장 등은 모두 공산주의자라는 이름으로 단죄되었다. 이 당시 외국 소재 미국 공보관 도서관을 비롯한 많은 도서관의 도서들도 공산주의 서적내지 이념적인 도서라는 이름으로 폐기처분되거나 격리수용되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검열과 이를 두려워하는 사서들의 자기검열현상이 심하여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사서들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던 시기였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던 시기였다. 소위 메카시즘으로 불리는 이 시대의 '마녀사냥'은 정치인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과 자유로운 사상, 학술상의 사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억압적인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메카시즘이 횡행하는 세상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이 억압되었다(Rorty 1955).

4. 2 한국에서의 금서사례

한국에서의 금서사례는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성리학을 국시로 선택한 조선 왕조 초기인 태종대에 도참사상과 음양사상을 담은 도가류(道家類)의 서적을 불태운 일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양명학·불교·노장사상에 관계된 책들은 조정의 금압정책에 의해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으나, 민간이나 일부 학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읽혀졌다. 조선 후기에 주자

성리학이 대세인 과정에서 왕조의 교체를 희구하는 다양한 사상이 유포된 '정감록' 등도 역모를 꾀한다는 의도로 금지되었다. 18세기에는 천주교에 대한 박해와 함께 천주교 서적의 분서를 가져왔으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국가의 기밀을 누설한다 하여 그리고 1860년 창시된 동학이 탄압의 표적이 되면서, 동학의 교리를 담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금서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과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많은 서적들이 금서가 되었는데, 특히 일제는 1909년 2월 <출판법>을 공포하여 사전검열제도를 확립하여, 체계적인 금서정책을 취하였다. 이때의 대표적인 금서로는 을사조약을 규탄한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민족주의를 고취한 신채호의 《을지문덕》,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은 대표적인 금서들이다.

8·15광복 이후에도 미군정청에 의해 출판물 규제법이 만들어졌으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반공을 국시로 표방하면서 공산주의를 미화·찬양하는 서적의 출판은 금지되었다. 이러한 성향은 1972년의 10월 유신을 거쳐, 80년대의 제5공화국에 이르러 더욱 심해졌다. 80년대에는 민중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당시의 군사독재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담은 다양한 출판물이 제작·배포되었으며, 이에 비례하여 탄압의 강도도 그만큼 커졌다. 제5공화국 정부는 1970년대 이후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을 폐간시켰으며, 제3세계 이론을 다룬 책, 한국 경제의 전개과정을 다룬 책,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책, 노동자의 실태를 소개한 책 등 대 학가에 널리 읽혀지던 책들을 일정한 기준도

없이 모두 이념서적으로 규정하여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1985년 5월에는 문공당 국과 경찰의 합동 단속반에 의해 '이념서적'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제5공화국의 금서정책은 정부가 금서목록에만 오르면 책이 더 잘 팔리는 기현상을 낳기도 하였다.

이 중에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금서사건은 해방 이후에 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 번째는 미군정시기; 두 번째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시기; 제3공화국과 유신시기; 제5공화국; 제6공화국; 그 이후로 나눌 수 있다(김삼용 1987).

첫 번째는 미군정시기로서, 미군정 당국은 처음에는 완전한 언론·출판의 자유보장 방침에 따라 좌우의 정치노선에 차이를 두지 않았지만 점차로 우익 진영의 언론·출판에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산주의 계열의 언론·출판물에는 점차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중 박순규의 '조선토지문제논고'는 남한에서의 토지개혁이 지주세력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을 때 나온 좌익측의 토지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자료집으로 미군정과 공산주의 계열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 예로는 김오성의 《지도자군상》(1946), 민주주의민족전선 사무국의 《조선해방연보》(1946), 이강국의 《민주주의 조선의 건설》(1946), 정시우 등의 《독립과 좌우합작》(1946), 조선인민당 선전부의 《인민당의 노선》(1946) 등이 있다.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시기에는 책의 종수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과 비례하여 금서도 공

산주의 서적을 제외하면 지나치지 않았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의식과 아울러 이데올로기성의 모든 해외 출판물의 국내 출반이 불허되는 등 정부의 지나치게 경색된 반공문화정책 때문에, 제1공화국 시기에는 오히려 금서가 될 만한 책이 별로 없었고, 서적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도 비교적 적었다. 이 때의 금서기준은 막스, 모택동 등의 공산주의 계열의 저작물, 임화, 김남천 등의 월북한 좌익 문인들의 작품, 고리키, 파스테르나크 등의 공산주의 국가 출신작가의 문학작품 등이었다. 이 이외에도 정치적 중립화 이론이나 학술을 다룬 저서나 논문의 번역 출간이 금지되었으며, 지방색을 부추기거나 그 외 주제를 다룬 소설도 금지되었다. 4월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이 붕괴되자, 그동안 억눌려 왔던 표현의 욕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이 시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다시피 한 시기로, 서적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없었고 따라서 금서라고 불릴만한 책도 없었다.

제3공화국 시기는 이승만 시대와 같은 원천적인 금서 시대로서, 공산주의계열의 저작물이나, 월북(혹은 남북) 좌익문인 혹은 공산국가 출신 문인들의 문학작품이 금지되었고, 반미의식, 계급의식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물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특수범죄처벌법에 관한 임시특별법, 반공법, 형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인해 각종 이념책들에 대한 원천적인 금서 조치가 행해졌으며, 이런 책들은 거의 발행되지 못했다. 주요 금서로는 김상협(1964)의 《모택동사상》, 김준엽, 김창순(1967-1976)의 《한국공산주의운동사》, 김지하(1970)의 《오적》 등이 있다.

10.26 이전의 유신 시대에는 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해 여러 종류의 책이 금서로 햇빛을 보지 못했으며, 저자와 출판사는 혹독한 탄압을 받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되고 탄압이 심한 시기였다. 이때부터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행정조치에 의해 출판물의 판금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유신정권은 10·26 사태까지 긴급조치 위반 등의 이유로 이른바 불온도서 33종, 음란저속도서 44종 등 77종을 판매 금지하였다. 그 사유는 공산주의 관계 도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서로 라틴아메리카의 혁명 이론서나 마르크스주의 등의 네오마르크시즘 관계 서적, 현실을 왜곡, 부정하는 사회안정 저해도서로 반체제이고 반정부적인 사회비판서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예는 구스타브 구티에레즈의 《해방신학》(1977), 김동길의 《길을 묻는 그대에게》(1978), 김병익의 《지성과 반지성》(1977), 김윤환 등의 《한국노동문제의 구조》(1978), 김지하의 《황토》(1975), 박현채의 《민족경제론》(1978), 백기완의 《자주교를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1979), 송건호의 《한국민족주의의 탐구》(1977), 염무웅의 《민중시대의 문학》(1979),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1974), 장준하의 《죽으면 산다》(1975), 전 미카엘의 《노동자의 길잡이》(1977), 파울로 프레리의 《페다고지》(1979), 프란츠 파농의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1979). 한완상의 《산업선교를 왜 문제시하는가》(1978) 등이 있다.

10.26사태 이후 또한 유신시기 이전에 못지않은 탄압과 억압이 있던 시대였다. 예를 들면, 강원룡이 옮긴 《크리스찬의 정치적 책임》(1979), 김대중의 《조국과 함께 민족과 함께》

(1980), 김정준의 《시편 명상》(1980), 양성우의 《북치는 앓은뱅이》(1980), 이무영의 《체제와 민중》(1980), 이문구의 《누구는 누구만 못해서 못하냐》(1980), 이순기의 《서민이 나의 친구다》(1980), 정을병의 《인동덩굴》(1980), 조태일의 《고여있는 시와 움직이는 시》(1981), 한완상의 《불균형시대의 문제의식》(1980)이 있다.

제5공화국 시기는 제3공화국 이후 지속되어 온 이념 서적에 대한 단속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이때는 문제서적, 단속도서 목록, 좌경불온도서, 이념서적 등의 이름으로 수많은 책이 '이념서적의 냉풍'에 휘말리게 되었다. "반국가 단체 및 공산주의 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북괴 등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중공, 소련의 공산주의 및 마르크스주의를 찬양하며 노동투쟁 및 폭력투쟁을 고무하는 내용의 책"을 문제도서로 분류하고 서점, 출판사, 복사점뿐만 아니라 각급 도서관까지 조사의 손길을 뻗치게 시작했다. 이런 외중에서 풀빛, 일월서각, 돌베개, 창작과 비평사 등의 일부 출판사들은 이념책 출판사로 낙인찍혀 리영희 등의 저자와 함께 특히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식적인 도서 유통구조에서는 하나의 금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시기의 금서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많으며, 주로 제3세계라든가 종속이론, 정치경제학, 노동문제, 4월 혁명, 광주문제 등의 책이 집중적으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특정 저자라든가 특정 출판사의 책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금서조치가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이 시대의 금서들을 학문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 분야에서의 금서의 예는 김동주의 《알

기 쉬운 정치 사회》(1985), 김성윤 편역의 《코민테른과 세계혁명》(1986), 킹스턴 만의 《레닌과 농민혁명》(1986), 탐비라 바니아의 《쿠바혁명의 재해석》(1985), 쇼 브루노의 《중국혁명과 모택동 사상》(1986), 싱클레어 앤드류의 《체 게바라》(1984), E. H. 카의 《볼셰비키혁명사》(1985), 커밍스 브루스의 《분단전후의 현대사》(1983), 파농 프란츠의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1977), 피셔 에른스트의 《마르크스 사상의 이론구조》(1985), 황인평이 엮은 《볼셰비키와 러시아혁명》(1985) 등이 있다.

경제분야에서의 금서의 예는 김수길의 《이야기 경제학》(1985), 김인철의 《자본주의란 어떻게 움직이는가》(1985), 김정로의 《제국주의론》(1987), 뚝 모리스의 《정치경제학과 자본주의》(1983), 맑스의 《경제학, 철학 수고》(1987), 미야카와 미노루의 《자본론 해설》(1986), 우리경제연구회의 《한국민중경제사》(1987), 프랑수와 바레의 《노동의 역사》(1979), 혼마요 이치요의 《현대 자본주의 분석의 기초이론》(1986), 레오 후버만의 《사회주의란 무엇인가》(1987) 등이 있다.

인문 사회분야에서의 금서의 예는 김청석 등의 《80년대 한국사회》(1986), 마르쿠제의 《해방론》(1984), 앤더슨의 《사회계급론 서설》(1986), 이석태의 《사회과학대사전》(1987), 신재용의 《실천의 철학》(1987), 론 포스 모리스의 《실천하는 민중의 역사관》(1986), 이재화의 《한국 근대민족해방운동사》(1986), 정인의 《들여라 역사의 외침을》(1985), 파울로 프레리의 《페다고지》(1980), 한국민중사연구회의 《한국민중사》(1986), 루

카치 등의 《문제는 리얼리즘이다》(1985), 이오덕 등의 《겨레와 어린이》(1986)가 있다.

제6공화국에서는 금서라는 말 대신에 ‘도서심의 결정목록’과 ‘좌경서적 압수목록’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도서심의 결정목록’은 주의, 경고, 제재 건의로 나누어지며, 제5공화국에 비해 그 내용이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양의 금서목록이 존재하였다. 이 때의 내용은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금서 이외에 많은 내용이 폭력이나 음란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목록에 나타난 책은 모두 125권으로 만화 68권, 소설 51권, 사진첩 3권, 기타 3권으로 되어 있다. 금서의 내용을 보면, 한울사의 《자본주의론》(1986), 《북한 현대사 입문》(1990), 태백사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1989), 백산서당의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1989), 백산서당의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1989), 교양과학연구회의 《일하는 자의 철학》(1986), 김노박의 《마르크스주의란 무엇인가》(1989), 김석형의 《고대한일관계사》(1988),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1988), 블라소바의 《철학의 기초》(1989),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북한)의 《조선문학통사》(1988), 아판세프의 《역사적 유물론》(1988), 이재화의 《한국 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1988), 이진경의 《사회구성체 비판과 사회과학방법론》(1986), 정민의 《깍뎀기를 벗고서》(1987), 정성철의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1989), 조기천의 《백두산》(1989), 한국민중사연구회의 《한국민중사》(1986), 한민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1989), 흥동

근의 《미완의 귀향일기》(1988)가 있다.

그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이전에 금서조치 되었던 많은 책들이 봇물처럼 서점으로 터져 나왔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확보된 시기였다.

4. 3 미국에서의 금서(Banned Books or Challenged Books) 사례

미국에서의 금서사례의 기원은 서양에서의 금서사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변증설을 주장한 프로타고라스의 저술 ‘제신에 관하여’가 신을 모독한 저술이라 하여 금서의 대상이 되었으며, 로마시대의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황제 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전파로 금서가 되었다. 중세 이후에는 기독교 사상을 비판하는 책들은 이단서라는 이름으로 금서가 되었고,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갈릴레이의 저술과 칸트의 비판철학 저술,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서 등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저술들을 그 목록에 포함시켰다. 18세기 이후 시민혁명이 각국에서 전개되자 보수적인 왕정을 유지하던 정부는 근대시민사상을 전파한 책들을 금서로 규정하였다. 현대에는 국가권력이 집중되는 나라에서 금서가 많아졌다. 파시즘의 이탈리아, 나치즘의 독일에서는 전체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책들을 금서로 지정했으며, 제2차 대전 이후 냉전시대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대립이 격화되면서 금서의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미국에

서는 현재 엄밀한 의미에서 금서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금서사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금서의 전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도전받는 도서(Challenged Books)”라는 개념은 미국에서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ALA)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Banned Books Week (BBW)”는 한 개인의 의견이 그 사회에서 비정통적이거나 유명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개인의 의견을 선택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축하하고, 그러한 책을 읽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정통적이거나 유명하지 않은 견해까지도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적자유는 이러한 두 가지의 본질적인 조건이 만족될 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는 모든 개인은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신념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아이디어들을 적절한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사용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나 그 작품의 내용이나 저자나 독자의 견해가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사회는 정보와 아이디어에 대한 제한되지 않는 접근의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ALA는 매년 Banned Books Week에 나타난 대부분의 자료는 실제 “금지” 되기보다는 “도전받는” 정도에 불과한데 왜 “Challenged Books Week” 대신에 “Banned Books Week”라고 주장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한다. 이에 대한 ALA의 답변은 비록 금지된 것이 아니라 도전받는 것에 불과한 책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들은 금지되기 위한 시도로 나타나며 성공적인 도전은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 대신에 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도전 및 금서운동에 대한 자각과 경계 때문에 생각보다 실제로 금서가 된 책들은 적었다. “Banned Books Week”의 스폰서는 “American Booksellers Association”, “American Bookseller’s Foundation for Free Expressi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merican Society of Journalists and Authors”,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Stores”, “Center for the Book of the Library of Congress” 등이다.

미국 내에서의 도서 검열자와 도서금지단체는 주로 종교적 단체나 보수성향인 우익지향의 단체 등이 많으며 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 Anti-Defamation League, 2) Banes and Noble, Bookseller, San Diego, California, 3)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4) Christian Voters League, 5) Columbus Metropolitan Library, 6) Comstock, Anthony-special agent for the U.S. Post Office, 7) Concerned Women for America-Beverly LaHay, president, 8) Drake, North Dakota-school board, 9) Dworkin, Andrea-feminist writer, 10) Educational Research Analysts-Mel & Norma Gabler, founders, 11) Graves County, Kentucky, school board, 12) Lake Lanier Regional Library system in Gwinnett County, Georgia, 13) MacKinnon, Catherine-feminist, Marion High School, Foxworth, Mississippi, 14) McCarthy, Jo-

seph R-US Senator, 15) Meese Commission, 16) National Ass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 17) National Assn. of Christian Educators (Robert Simonds, founder), 18) National Federation of Decency(Rev. Donald Wildmon, exec. dir.), 19)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20) New England Watch and Ward Society, 21) Olathe, Kansas-School System, 22) Parade Magazine-National Magazine, 23) Rafferty, Max-CA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1963), 24) Rib Lake, Wisconsin-School Board, 25) Roberts, Cokie-ABC News Commentator, 26) Roman Catholic Church-Index of Prohibited Books, 27) Sixty Minutes, CBS News Program Feature Story on Internet, 28) Stahl, Leslie-60 Minutes News Commentator, 29) Talmadge, Eugene-Governor of Georgia (1941)

2003년도에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도전을 받았던 책들은 주로 음란물, 성적 부적절 도서, 마법 조장 등 다양한 이유로 지칭되며 도전을 받았던 이들 책의 목록과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마술과 마법사에 초점을 맞추어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진 것; 《Harry Potter Series》 by J. K. Rowling, 2)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음란한 언어와 아동 또는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이유로 알려진 것들; 《Of Mice and Men》 by John Steinbeck, 《The Chocolate War》 by Robert Cormier, 《The

Catcher in the Rye》 by J. D. Salinger, 《Alice series》 by Phyllis Reynolds Naylor, 《Go Ask Alice》 by Anonymous, 《Fallen Angels》 by Walger Dean Myers, 《Blood and Chocolate》 by Annette Curtis Klause, 3) 성적내용을 담고 있거나 인종분리주의를 조장하거나 음란한 언어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진 것들; 《I Know Why the Caged Bird Sings》, 《Summer of My German Soldier》 등이다.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에 의해 기록되거나 보고된 6,364건의 도전받은 작품이 있다. 그 중 1,607건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라는 이유로, 그리고 1,427건은 “음란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1,256건은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842건은 “초자연적인 주제나 초월주의 또는 사탄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737건은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515건은 “동성연애적이거나 동성연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419건은 “종교적인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도전을 받았다. 그 이외에도 “나체주의”, “인종차별주의”, “성교육”, “반가족주의” 등의 이유로 도전을 받았다. 그 중 71%의 자료는 학교나 학교도서관에서 도전받았으며, 다른 24%는 공공도서관에서 도전받았다. 또한, 그 중 60%는 부모에 의해, 15%는 후견인에 의해, 그리고 9%는 행정가에 의해 도전받았다.

5. 금서에 대한 법원의 판례

5. 1 금서에 대한 한국법원의 판례

한국에서의 금서에 대한 한국법원의 판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다. 유교적인 전통이 비교적 강한 한국에서 금서에 대한 일반 대중의 본격적인 관심은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인 마광수가 저술한 《즐거운 사라》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즐거운 사라》는 주인공인 미대 여학생 ‘사라’가 생면부지의 남자와 갖는 즉흥적 동침, 동성연애, 자위 행위, 스승과 별이는 부도덕하고 음란한 성행위 등을 묘사하고 있는 퇴폐적인 성애 소설로서 1991년 서울문화사에서 발행되었다. 이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1차와 2차에 대한 검토 후 이 소설이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 파괴, 미풍 양속 저해와 함께 자아 정체성을 채 갖추지 못한 청소년층에게 성적 충동의 자극을 일으켜 성범죄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제재건의’ 결정(1992. 9)을 내리고 문화부와 서울지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제재건의’ 결정에 따라 검찰은 《즐거운 사라》가 형법상 ‘음란문서’의 범주에 든다고 결론을 짓고, 작가인 마광수와 발행인 장석주를 1992년 10월 구속·기소했다. 이의 근거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있으며(헌법 제21조 4항, 제37조 2항), 동료 문학인들의 마광수의 작품에 대한 평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학교수와 제자와의 변태적 성행위 등이 문학적 승화없이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음란하고

도 직설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작품 상황 설정의 패륜성과 함께 여성을 동물적으로 상품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차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마광수, 장석주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될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음란 문서의 판정 및 양형의 기준들을 제시했다; 외설여부의 판단은 작품 자체에 국한되어야 하고 문학성의 평가에 있어 그 일부만을 판단할 경우 타당한 결론 도출이 어렵다. 음란의 법률적 정의는 “그 시대의 건전한 상식과 통념을 지닌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야기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되었다. 이에 대한 변호인들의 주장은 음란 문서의 판정 기준은 1) 어느 정도 상세하고 노골적인 묘사를 하는가, 2) 관련 문서의 구성에 있어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3) 묘사 방법에 있어서 비유적, 상징적인가 혹은 즉물적, 직접적인가, 4) 관련묘사 부분이 중추적인 부분을 차지하는가 등으로 집약되었다.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에서 몰락한 조각가이며 유부남인 제이(J)가 18세의 여고생 와이(W)와의 성관계 등 도착적인 성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분량에 걸쳐서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성묘사로 차있고, 작가 스스로 “자기모멸을 위하여 포르노의 양식을 빌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장정일의 소설을 음란물로 단정하면서, 그 논거로서 전체 소설내용의 80% 이상을 성교행위 묘사가 차지하고 있는 점, 변태적 행위가 총동원되고, 상황하고 상세하며 자극적이라는 점,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의 나이차이가 많고, 남녀의 성기명칭을 비속어를 여과하지 않은 채 사용하여

표현정도가 노골적이라는 점등의 이유를 들었고, 독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작가의 상업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하였다. 당시의 음란물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음란물의 개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며, 음란물의 판단기준은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 그 수법, 묘사 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 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느냐 여부 등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의 여부라고 지적하였다.

국내의 언론3사에서 발행한 스포츠신문들이 음란물 관계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은 도덕적인 책임은 회피할 수 없지만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고 법원에 의해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이 사건의 내용과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 굴지의 언론3사가 경영하는 종합일간지는 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3사에서 발행하는 스포츠신문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만화, 연재소설, 광고, 컬러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편집국장과 만화가들은 각각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로 각각 기소되었다. 검찰의 논점은 청소년 유해론이며, 이에 대한 신문사와 만화가측의 반론은 연재만화 자체가 음란물이 아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품을 창작한 것도 아니며, 전체 만화의 흐름을 무시하고 일부 장면만을 발췌하여 음란성을 문제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기소내용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스포츠 신문사건에서는 편집국장과 만화가들이 신문을 제작하여, 가판을 통하여 구체적인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것이 기소내용인데 상당인과 관계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스포츠신문은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위 법률 제2조 10호는 등록된 발행인을 발행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문의 제작책임은 묻는 경우 발행인인 대표이사 외에 편집책임자인 편집국장, 만화를 게재한 만화가도 제작자로 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기사를 게재한 기자도 모두 신문제작책임을 지는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편집국장과 만화가들이 미성년자에게 직접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신문의 판매경로가 신문사에서 직접 가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몇 차례의 위탁판매계약을 거치는 위탁판매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사측에 직접 가판판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의문이 있었다. 결국 도덕적으로 비난할 문제이지, 법률상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하여 기소중지 되었다.

서갑숙의 《때론 나도 포르노그래피의 주인공이고 싶다》에서 1999년 10월 여성 텔런트 서갑숙의 성체험기 《나도 때론 포르노그래피의 주인공이고 싶다》가 중앙 M&B에서 출간되었다. 강간과 혼음 등의 내용을 담은 서갑숙의

성체험기는 판매되기 시작한 지 열흘만에 5만부 이상 팔리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위의 책이 출간될 당시 KBS-TV의 ‘학교’라는 드라마에서 교사 역을 맡고 있어서 화제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서울지검 형사3부는 24일 서씨의 성체험 수기가 청소년 등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서씨의 수기에 대한 음란성 여부를 판별토록 지시했으나 10월 27일 책 내용에 사법처리 해야 할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했다. 이는 검찰 내사에 대한 문화계와 네티즌들의 반응이 부정적인데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성인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등 강력한 제재 없이 청소년유해간행물로만 결정하는데 따른 것이었다. 검찰의 내사 결정에 대해서는 국내 대부분의 언론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명 인사의 성체험이 여과 없이 유포되어 성문화가 더 왜곡될 수 있지만 이미 확산된 사회적 반향과 찬·반 논란을 통해 시민 개개인이 판단 기준을 세우는 차원으로 충분하며,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대처할 만한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 수기에 대한 문화계와 다수 네티즌들의 반응은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문화계의 자율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주류였다”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청소년에게는 유해도서로 지정되었지만 일반 성인이 구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10월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갑숙의 《나도 때론 포르노그래피의 주인공이고 싶다》를 청소년 유해간행물(제4178호 심의결정)로 결정했다. 한 여성이 여러 남성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벌이는 성행위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혼음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기술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성충동을 자극하고 성윤리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했다.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책은 표지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표시를 하고 비닐 포장해 일반 도서와 구분진열, 성인에게만 팔 수 있다.

《에로스 훑쳐보기》는 도서출판 심지에서 1995년 12월 발행된 것으로, 동·서양의 미술 속에 나타난 성(性)을 주제로 한 작품을 분석한 것이다. 스포츠조선에 「미술속의 에로티시즘」이란 제목으로 연재하다 중단되었던 글을 중심으로 일부 신규 원고를 추가하여 98편의 글을 그림과 함께 묶어 펴낸 것이었다. 피카소의 남녀 성기 노출 그림, 꾸르베의 여체 음부 체모 노출 그림, 일본의 남녀 성기 노출 춘화, 김홍도, 신윤복의 춘화 등 남녀 성희 장면, 성기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음란한 그림을 다수 수록하고 있었다. 1996년 1월 문화체육부 출판진흥과로부터 심의 의뢰를 받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2분과 위원회에서 '제재건'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1996. 2. 문제의 도서를 출판한 출판사 심지의 대표 이승배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간행물윤리위원회에 보내었다. 일간신문 등에 "에로스 훑쳐보기 음란 도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출판사 측의 반발이 보도되었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본건을 '제재건'에서 한 등급 아래인 '경고'로 확정 의결하되, 조건부로 '성적인 욕정을 자극할 수 있는' 5개 컬러 도판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도서출판 정인엔터프라이즈의 화보집인

《세미-결》발행 유통에 대한 사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등록 취소한 도서출판 정인엔터프라이즈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1972. 12. 26. 법률 제2393호로 개정된 것)의 제5조 2 제5호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 중 '음란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 판결 이후 서울고등 법원에서 화보집 《세미-결》은 '저속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출판사의 등록 취소 처분을 실시하였다.

《산타페》는 일본의 여배우 미야자와 리에를 모델로 찍은 사진 60여장을 모아 발간한 누드집을 국내에 들여와 인쇄·출판한 것인데, 일부 사진은 가슴이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 전라이고 드물게는 음모 부분까지 드러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난잡스레 유행이나 국소부위를 강조하거나 성교 장면을 연상케 하지 않을뿐더러 그 사진들의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정보는 예술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여져 그 예술성으로 인하여 독자로서 하여금 성적 표현에 의한 성적 자극을 감소·완화시키고 있으며, 위 사진첩의 사진들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사진첩들은 오늘날의 사회 통념상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유연실/이브의 초상》은 사진첩으로서 가수 겸 여배우 유연실을 대중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서, 대부분은 평상복 혹은 나이트가운 차림으로서 있거나 혹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고, 위 사진들 중 전라인 것, 반라인 것, 속옷 또는 타월 등으로 하반신 일부를 가린 차림 등의 사진으로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보다는 여성의 신체를 특정 부분만을 유난히 강조하여 촬영한 것이거나 선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어서 예술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전체로서 보아 오늘날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정하였다. 《산타페》와 《이브의 초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요지는 ‘선정정보보다는 예술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져 음란성 인정은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진 작품으로서의 예술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산타페》와 함께 유연실의 누드사진집 《이브의 초상》(92. 11. 15. 발행)의 경우는 심의결정 ‘제재건의’에 따라 해당 용산구청장 명의로 출판사 등록 취소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음란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 원심 파기 결정이 난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1992년 실로 사회윤리가 심각하게 도전 받은 한 해였다. 정치적 변혁기에 음란물의 증가가 우려할만한 수

준이었으나 92년 말에는 음란 출판물의 증가가 진정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음란·퇴폐 출판물이나 폭력 조장물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던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매우 중요한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이 공권력에 의하여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적인 제재의 부정적인 면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다른 어떤 방법도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의 환기, 경고, 설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간행물들의 음란·퇴폐성은 심화되기만 했다. 거기에는 정당화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었고 돈을 벌려는 상흔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본 여배우 미야자와 리에 사진첩 선풍은 음란물과 돈과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준 경우다.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 사진 전문가들은 그 사진들이 사진 기술로는 괜찮으나 순전히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어떤 예술성도 없음을 알려 주었다. 그 책은 수억원의 매상고를 올렸으며, 그 성공에 자극을 받아 적어도 세권 이상의 음란성 사진첩이 연이어 출판되었다. 돈 앞에 도덕성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 주었고, 시민들의 공동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재인식케 하였다.

5. 2 금서에 관한 미국대법원의 판례

미국의 음란물에 관한 규제법제를 파악하려면 역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각종 법률의 조문보다 먼저 각종 음란물 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추적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특히 미국법의 법원의 하나는 관습법이므로 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례는 음란물 죄에 관한 연방법의 역할을 해 왔다. 아래에 보여지는 대법원의 판결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변동되어 왔는데, 중요한 사항은 음란물에 대한 판정기준이 성인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청소년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든지 예술작품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예술작품과 예술작품인척 하는 것을 구분하여 진정한 예술작품만을 인정하여 주었다(외국의 간행물윤리제도 편, 1993). 이러한 판결문은 연방법의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연방법, 주법 적용의 기준이 되어 왔다. 미국 음란물 죄의 기원은 1663년 영국의 Sedley 사건판결(King v.Sedley)과 1868년 Hichlin 사건 판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본격적으로는 1933년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의 유명한 소설인 《율리시즈》를 간행한 출판사가 음란물 죄로 기소되었는데 미국 연방지역 재판소 및 연방순회재판소에서는 이 소설이 부분적으로는 외설적인 구절이 있지만 작품 전체로 보아서 또한 그 주제로 보아서 음란도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담당 판사의 판결문 요지는 작가의 외설적 의도여부와 그러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전체로 본 작품의 경향 내지 영향이 그 시대의 통상적인 독자에게 성적 충동 또는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가의 여부가 음란성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율리시즈 판결원칙은 미국 법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는데 즉 한 작가가 작품을 책으로 출간하면 그 책은 이미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회의 독자가 그 책의 내용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작가가 서문, 후기 등에서 주장하는 동기 및 목적 등에 관한 변명은 음란성 판정여부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음란성 판단의 “객관설”로 세계 각국의 법원은 사회일반의 성에 관한 도덕감정의 순결성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이 “객관설”을 채택하고 있다.

1957년 로스(Roth)사건의 판결원칙은 음란성의 기준선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례로 인정된다. 1957년 Samuel Roth는 장사를 목적으로 섹스 잡지 및 도서를 우송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로스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판결문 요지는 3가지로 나뉘어진다. 1)작품이나 자료의 지배적인 테마가 현재사회의 평균적인 보통사람들에게 색욕적인 흥미를 자극할 때, 2)현재사회의 기준을 명백히 침해하는 성적 자극물이어야 한다. 3)음란으로 판정되는 성적 자극물은 “보상할만한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로스사건 판결은 포르노의 음란성 판단기준을 성인과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배제한 최초의 원칙으로서 음란물을 포르노와 일반적인 성 표현물보다 좁은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 판결은 어떤 자료가 “사회적인 가치가 전혀 없을 때” 음란으로 규정함으로써 문학이나 예술, 학문의 자유의 운신의 폭을 대폭 넓혀준 것을 평가되었다.

긴스버그(Ginsberg)사건 판결원칙(1968년)은 1968년 긴스버그가 뉴욕 주정부로부터 음란물 죄로 처벌받은 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청소년용은 성인용과 구분하여 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묘사물을 반포,

판매한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반포, 판매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주법제정의 근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강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사건 판결의 의도이다.

1973년 밀러(Miller)사건은 Marvin Miller라는 시민이 섹스도서와 섹스필름을 선전하고 광고 부로슈어를 레스토랑 주인에게 발송한 것을 이를 주인이 고발하여 주당국으로부터 처벌 받은 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 밀러 판결에서는 음란의 판정기준이 국가전체의 단일기준이 아니라 주나 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술작품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예술 흥내만 낸 것은 음란으로 판정되며 작품 전체로 보아 진정한 문학적, 예술적 가치를 가져야 음란으로 판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각국의 법원에서 “실제적인 성행위 묘사, 동성연애, 수간, 가학-피학증” 등이 악성 포르노로서 음란에 해당된다는 판시가 나왔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지적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음란물에 관해서는 유해한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차원에서의 보호장치를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도서관계의 입장 표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봉사자가 추구하는 지적자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인하고 지적자유 보호를 위한 활동과 위배되는 사항, 법원의 판례 등을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지적자유에 대한 법률적 기반에서는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검열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적 제반권리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정보생산이 폭증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알 권리’는 국정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한 ‘정보공개제도’와 ‘정보접근권’, 그리고 ‘독서의 자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도서관 권리선언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적자유 선언은 자료수입과 제공의 자유, 그리고 이용자의 비밀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권’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정보접근권은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정보에 대해 국민이 원하면 공개나 접근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은 도서관이 입수할 수 있는 모든 행정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미국도서관협회(ALA)는 산하에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명칭은 ‘지적자유위원회’, ‘지적자유사무국’, ‘독서자유재단’, ‘지적자유원탁회의’, ‘지적자유활동조직’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ALA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정책선언, 결의문 채택, 지침 발표 등으로 지적자유 고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간행물 발간 등을 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국립중앙도서관 산하에 이러한 기구들이 제대로 결성되어 있지 않은데 도서관의 지적자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의 조직체의 설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금서 또는 유해도서로 인정되는 자료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금서로 판정된 자료는 주로 어떤 종류의 자료가 중심이 되었는지를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파악하였다. 미국에서의 금서는 대개 반체제적인 도서, 종교적인 이단서적, 음란물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950년대로 분기점을 가지는 냉전시대 이전에는 반체제적인 도서들이 많이 금서조치 되었으나 이후에는 주로 음란물과 포르노그래피 등이 금서조치 되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자료가 떠돌아다니는 1990년 중반 이후에는 소극적인 금서정책에서부터 유해한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물 방지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금서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오랜 금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상황도 미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금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3공화국, 유신시대, 제5공화국에서 현저한 것으로 이 시기에는 불온도서, 반체제 도서 등의 이름으로 많은 탄압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쳐오면서 금서조치가 해제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많이 신장되었지만 음란물의 경우는 여전히 금서로 지정되었다.

한국과 미국에서 금서로 판정된 도서의 대법

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금서로 인정되는 음란물의 헌법적 판정의 여부와 판정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금서에 대한 한국법원의 판례는 마광수 교수가 저술한 《즐거운 사라》,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서갑숙의 《때론 나도 포르노그래피의 주인공이고 싶다》, 도서출판 심지의 《에로스 훔쳐보기》 등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음란물로 판정된 것들이다. 당시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음란물의 정의는 “그 시대의 건전한 상식과 통념을 지닌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에도 정인엔터프라이즈의 화보집인 《세미-결》, 《유연실/이브의 초상》, 《산타페》 등은 화보집으로서 비록 대법원 판결에서는 선정성보다는 예술성의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작품들이다. 이들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음란물이나 퇴폐출판물, 폭력 조장물 등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었다.

미국에서의 음란물의 판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시대적으로 약간씩 변동되었지만 음란물에 대한 판정기준이 성인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청소년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로스사건의 판결원칙은 음란성의 판정 기준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긴스버그 사건의 판결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미국의 법원이나 도서관계에서는 지적자유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과는 별도로 유해한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보호장치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들을 유해도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의 여건상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게임 등으로 대변되는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하여 청소년들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취약하다. 물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유해물 제공을 차단하는 소

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웹상에서의 음란사이트 차단장치 등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이들의 폐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한편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유해한 음란자료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삼웅. 1987. 『금서; 금서의 사상사』. 서울 : 백산서당.
- 김영기. 1999.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본 한국 사회 지식의 흐름』.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향신. 1983. 미국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 도서검열에 관한 고찰(상). 『도협회보』, 24(1): 2-8.
- 이명희. 2001.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저해하는 사례 연구. 『한국비블리아』, 12(2): 141-162.
- 이인호. 1997.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법과 사회』, 7: 247-275.
- 정현태. 1999.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편, 1993. 『외국의 간행물윤리제도』. 서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한인섭. 1997. 검열과 자유와 책임. 『철학과 현실』, (봄): 57-75.
- 홍준형. 1997. 표현의 규제와 법적 규제의 한계. 『문학과 사회』, 37(봄): 55-81.
- Berninghausen, D. K. 1970. The Librarian's Commitment to the Library Bill of Rights. *Library Trends*. 19(1): 19-38.
- Busha, C. H. 1972. Intellectual Freedom and Censorship : The Climate of Opinion in Midwestern Public Libraries. *Library Quarterly*. 42(3): 283-301.
- Fiske, M. 1959. *Book Selection and Censorship*. CA, L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pkins, S. M. 1996. The Library Bill of Rights and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Library Trends*. 45(1): 61-74.
- Krug, J. and R. L. Funk. 1995. Pressure Group vs. Library : Polices, Procedures, Public Relations as De-

- fenses. *Wilson Library Bulletin*. 69(2): 66-68.
- Krug, J. and A. Penway. 1994. Confidentiality in Libraries: An Intellectual Freedom Modular Education Program. *Wilson Library Bulletin*. 68(6): 64-65.
- McDonald, F. B. 1994. Censorship and Intellectual Freedom: A Survey of School Librarians' Attitudes and Moral Reasoning. *Library Journal*. 119(1): 178.
- Niosi, A. E. 1998. An Investigation of Censorship and Selection in Southern California Public Libraries : A Qualitative Study. *Public Libraries*. 37(5): 310-315.
- Oder, Norman. 1998. Intellectual Freedom Legislation: The State of the States. *Library Journal*. 123(6): 54-58.
- Osburn, C. B. 1990. Impact of Collection Management Practices on Intellectual Freedom. *Library Trends*. 39(1/2): 168-182.
- Robbins, L. S. 1996. Champions of a Cause: American Librarians and the Library Bill of Rights in the 1950's. *Library Trends*. 45(1): 28-49.
- Rorty, J. 1955. The Libraries in a Time of Tention. *Commentary*. 19(July): 30-37.
- Schladweiler, C. 1996. The Library Bill of Rights and Intellectual Freedom: a Selective Bibliography. *Library Trends*. 45(1) : 97-125.
- Wiegand, S. A. 1996. Reality Bites: The Collision of Rhetoric, Rights, and Reality and the Library Bill of Rights. *Library Trends*. 45(1): 75-86.
- Woodward, D. 1990. Intellectual Freedom, Parts 1 and 2. *Library Trends*. 39(1/2): 1-185.
- <http://www.ala.org/ala/oif/basics/intellectual.htm>
- <http://www.ala.org/ala/oif/bannedbookweek/bannedbookweek.htm>
- <http://www.ala.org/ala/oif/bannedbookweek/bookburning/bookburning.htm>
- http://www.court.go.kr/precedent/sentence_read.asp